

# 이천시 시보 발행규칙

소관부서 : 홍보담당관

제정 1996· 3· 1 규칙 제 18호  
개정 1998· 10· 19 규칙 제136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  
개정 2001· 12· 6 규칙 제234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  
개정 2006· 2· 22 규칙 제327호  
일부개정 2013· 5· 6 규칙 제478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)  
일부개정 2019· 1· 1 규칙 제645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 
일부개정 2020· 12· 29 규칙 제691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 
일부개정 2023· 3· 6 규칙 제743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이천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발행일)**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, 고시,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부터 한다.

**제3조(규격)** 시보의 규격은 16절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.

**제4조(편찬구분과 그 순위)**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례란
2. 규칙란
3. 훈령란
4. 예규란
5. 인사란
6. 자치법규 입법예고란
7. 고시란
8. 공고란
9. 행정란
10. 기타란

**제5조(인사란)** “인사란”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, 전직, 휴직,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.

**제6조(게재의뢰)**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본을 붙여 홍보담당관으로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·10·19, 2001·12·6, 2013·5·6, 2019·1·1, 2020·12·29, 2023·3·6>

1. 조례 2부
2. 규칙 2부
3. 훈령 2부
4. 기타자료 각 2부

**제7조(배부기준)** 시보는 국가기관, 경기도 및 각 시군, 산하 읍·면·동 및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시보의 보급)** ①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.

②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9조(시보의 공문대체)**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1. 자치법규의 공포
2. 훈령·예규의 발령

**제10조(전자시보의 운영)** 시보는 이를 전자문서형태로 발간하는 시스템(이하 “전자시보”라 한다)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06·2·22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·10·19 규칙 제136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및 제3조 생략**

부칙 <2001·12·6 규칙 제234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부칙 <개정 2006·2·22 규칙 제32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·5·6 규칙 제4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이천시 시보 발행 규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문화공보담당관실”을 “예산공보담당관실”로 한다.

⑤ 부터 ⑦ 까지 생략

부칙 <2019·1·1 규칙 제645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** 생략

**제4조** 생략

**제5조** 생략

**제6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⑫ 까지 생략

⑬ 「이천시 시보 발행규칙」 제6조 중 “예산공보담당관실”을 “홍보관광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⑭ 및 ⑮ 생략

부칙 <2020·12·29 규칙 제691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이천시 시보 발행규칙」 제6조 중 “홍보관광담당관실로”를 “소통홍보담당관으로”로 한다.

부칙 <2023·3·6 규칙 제743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이천시 시보 발행규칙」 제6조 중 “소통홍보담당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⑧ 부터 ⑫ 까지 생략